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49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6.

발 의 자:백혜련·김남국·김용민

김종민 • 박범계 • 박주민

소병철 · 송기헌 · 신동근
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2019. 12. 3 0.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, 2020. 1. 14. 공포되었음.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, 「국제형사사법 공조법」상 검찰청·검사장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·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표현을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(안 제15조제1항제 1호, 제16조, 제20조제1항, 제21조제1항, 제29조, 제37조).

법률 제 호

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 중 "지방검찰청 검사장(이하 "검사장"이라 한다)에게"를 "지방검찰청 검사장(이하 "검사장"이라 한다)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"로, "명하는"을 "명하거나 요구하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법원 또는 검사가"를 "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"로, "법원 또는 검사"를 "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자의수사처장"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중 "검사장"을 "검사장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명령을 받은 검사장"을 "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"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지방검찰청"을 "지방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"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명령을 받은 검사장"을 "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"으로 한다.

제29조의 제목 중 "검사"를 "검사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검사는"을 "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"으로 한다.

제3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혅 했 아 제15조(법무부장관의 조치) ① 공 제15조(법무부장관의 조치) ① --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공조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-----지방검찰청 검사장 (이하 "검사장"이라 한다)에 | (이하 "검사장"이라 한다) 또 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 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게_----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하는---명하는 것 2. (생략) 2. (현행과 같음) ②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② ------법원 또는 검사가 보관하는 소 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 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것일 경 범죄수사처장이-----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 는 법원 또는 검사에게 공조요 -----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 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 공직자범죄수사처장-----. ③ (생 략) ③ (현행과 같음) 제16조(검사장의 조치) 제15조제1 제16조(검사장 등의 조치) -----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·----명령 또는

검사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제20조(관할 법원) ① 제17조제2 지하에 따른 영장 청구와 제18조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는 그검사가 소속한 <u>지방검찰청</u>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1조(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) 저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체 없 이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 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②・③(생 략)

제29조(검사의 공조요청) 검사는 지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,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제37조(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) 제

|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직자범죄수사처장 |
| |
| |
| 제20조(관할 법원) ① |
| |
| |
| <u>지방검찰청 또는</u> |
|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|
| |
| ② (현행과 같음) |
| 제21조(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) |
| ① |
|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|
|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- |
| |
| |
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|
| 제29조(<u>검사 등</u> 의 공조요청) <u>검사</u> |
|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|
| <u>o</u> |
| |
| |
| |
| |
| 제37조(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) |

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이나 서류송부,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나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거쳐야 한다. <단서 신설>

| <u>다만, 고위공직자</u> |
|------------------|
| 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 |
| 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|
| <u>하다.</u> |